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855

발의연월일: 2023. 2. 6.

발 의 자 : 허 영 · 신정훈 · 서영교

이개호 · 임호선 · 김병주

박상혁 · 김철민 · 강훈식

송갑석 · 소병훈 · 최종윤

한병도 · 정성호 · 김윤덕

박광온 • 백혜련 • 안규백

한기호 · 김두관 · 홍익표

주철현 • 고민정 • 김회재

이철규 • 인재근 • 노용호

권성동 · 신현영 · 박정하

김기현 · 정우택 · 김영주

유상범 · 오영환 · 안철수

조수진 · 조은희 · 양금희

최강욱 • 정경희 • 이종성

전주혜 • 우원식 • 이양수

황보승희 · 서일준 · 신원식

윤상현 • 이원욱 • 하영제

이주환 · 장철민 · 남인순

최인호 · 강대식 · 김용판

지성호 · 정운천 · 박대출

이용빈 • 박대수 • 윤두현

이 용・노웅래・송기헌

이만희·백종헌·최승재 임종성·권인숙·이소영 조경태·우상호·홍정민 이형석·김한정·최기상 김남국·김교흥·윤호중 이종배·조명희·김영진 소병철·송재호 의원 (86인)

제안이유

지난해 5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고 올해 6월 공식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특별자치도로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핵심요소들이 법안 제정 당시 부처 간 이견 등으로 빠지게 됨.

현행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조문이 400개 조항이 넘고, 2006년 법 제정 당시에도 300여개 이상의 조문으로 구성된 법안이 수정가결 되었는데 반해 강원특별자치도법은 특별자치도 설치 근거와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23개 조항에 불과해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만 담아,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자치조직·인사의 자율성 확대, 핵심 규제의 개선과 권한이 양,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교육자치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의 내용을 마련해, 6월 11일 정식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출범

을 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자치조직의 자율성 강화(제8조,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 1) 도지사와 도교육감의 선거 및 선임방법에 관하여는 법률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2) 지방의회의원의 정책지원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두는 등 지방의회 와 집행기관의 구성·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3) 부지사의 수와 분장사무 및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나. 교육자치(제25조 및 제26조)
 - 1) 부교육감의 수와 분장사무 및 행정기관의 설치·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2) 각 시·군에 교육지원청을 두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과 명칭, 조직과 운영 등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 다. 첨단과학기술육성 및 기반조성(제41조부터 제47조까지)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 데이터융복합, 정밀의료 기기 등 첨단과학기술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강원과학기 술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2)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지식산업분야의 육성과 기술연구 및 전문 인력양성을 위하여 국가산업단지인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

할 수 있도록 함.

- 3)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 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4)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상수원보호 구역의 상류지역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5) 수질오염물질, 유해화학물질, 가축분뇨 등 버리는 행위 등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첨단과학기술단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구체적인 행위는 도조례로 정할수 있도록 함.
- 라.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 운영(제48조부터 제59조까지)
 - 1) 강원자치도 산림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위하여 도지사는 종합 계획심의회를 거쳐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진흥지구의 지정 •변경·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 2) 도지사는 산림이용진흥지구 활용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진흥지구 지정 시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택지개발계획 수립, 관 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
 - 3) 도지사는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를 지정 및 취소 또는 대체지 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도지 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 4)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건축허가, 관광지·관광

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도로점용허가 등 각종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 며,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함.

- 5) 산림이용진흥사업을 위하여 산지전용, 행위제한 등 기준을 도조 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백두대간 보호지역 행위제한에 관한 산림청장과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도록 함.
- 6)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촉진을 위해 생태·자연도 1·2등급 권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공원법」, 「산림보호법」 등 행위제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7) 진흥지구 내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 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 심의를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두 도록 함.
- 8)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기반시설 설치 등 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관광 진흥(제88조부터 제91조까지)

1) 강원자치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관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 촌특별세·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 도록 함.

- 2) 강원자치도에 있는 카지노 및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매출액 규모 및 총량은 204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폐광지역에 있는 카지노업 허가 등에 관한 문화체육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 바.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농지전용허가 등 특례(제92조부터 제94조까지)
 - 1) 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전용허가 (변경허가를 포함)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도록 함.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를 다른 부지로 전용허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시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함.
- 사. 농・축・수산물 등 군 급식 공급지원(제95조)

강원자치도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은 국가가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접경지역 군부대에서 접경지역 내 생산되는 농산물 등에 관하여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며, 수의계약의 대상, 품목, 수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와 국방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 아. 자연환경 보전관리 및 환경보전협력기금 설치 등(제96조부터 제10 0조까지)
 - 1) 국가는 강원자치도를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중점지역 인 '탄소중립 녹색자치도'로 조성할 수 있고, 녹색자치도 조성사업 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2)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환경 및 생태자원의 적극적인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보전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재원은 환경오염시설 배출부과금, 하수도법의 과징금 및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기타 전입금으로 하고, 국가는 기금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3) 도지사는 환경교육 시범도시를 지정하여 환경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도시의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자. 환경영향평가 등 권한 이양(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

-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외의 자가 시행하는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는 도지사에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요청 등, 검토, 협의내용 통보기간, 변경협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도록 함.
-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도지사에게

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 방공기업이 시행하는 사업은 협의를 제외하도록 하고, 도지사는 환경부와 협의하여 별도의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

- 3)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 시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사업은 협의를 제외하도록 함.
- 4)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 한 사항과 구체적인 판단기준 등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위원 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5) 「자연환경보전법」의 자연경관영향협의는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강원자치 도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6) 기후변화영향평가에 관하여는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건강영 향평가에 관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도지 사의 권한으로 하도록 함.
- 차. 임업 진흥 및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제109조부터 제113조까지)
 - 1) 산지관리법의 보전산지 변경해제, 산지구역 지정, 산지전용허가・

신고, 재해방지 등 조사·점검·검사, 복구설계승인 및 준공검사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도록 하고, 보전산지 지정해제,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등 대통령령 및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2) 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함.
- 3) 자연휴양림 지정 및 조성(지정 후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대 상지에 한정함)에 대한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 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4) 백두대간 보호지역 행위제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등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하고, 그 범위·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있도록 함.
- 카.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 특례(제114조부터 제121조까지)
 - 1) 국가는 강원자치도 접경지역에 민군복합단지 조성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고, 민군복합단지 조성계획 수립 시 도지사와 협의하도 록 함.
 - 2) 민간인 통제선 및 제한보호구역은 거리를 완화하여 지정할 수 있 도록 하고, 군사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하여 도지사가 직접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함.

- 3) 국방부장관은 강원자치도의 미활용 군용지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미활용 군용지의 징발해제·양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전에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도록 함.
- 4) 미활용 군용지에 대하여 공익사업 또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을 요청한 경우 우선 검토하도록 하고, 미활용 군용지의 매각, 무상양여 등의 특례를 부여함.

타. 폐광지역 광물에 관한 특례(제122조)

폐광지역 안에서 석탄 채굴과정에서 발생한 경석(硬石)은 광업법상 광물의 지위를 인정하도록 함. 법률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887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 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 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산업글로벌도시"란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 등이 가져오는 새로운 산업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첨단산업 육성, 자유로

- 운 기업활동, 국제적 수준 인력양성,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및 국 제교류의 중심기능이 활성화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 2. "산림이용진흥지구"란 산림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위하여 제48 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 3. "교육특구"란 강원특별자치도의 국제적인 교육 및 다양한 교육환 경 조성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제64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 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만 적용한다.
-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입법·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운영목표와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강원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강원도가 누리던 행정상·재정상의 이익을 강원자치도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 ⑤ 국가는 낙후된 강원자치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강원자치도의 책무) ① 강원자치도는 강원자치도에 대한 국가정 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② 강원자치도는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의 취지에 맞게 강원자치도의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강원자치도는 강원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협약(자치경찰과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완화등의 결과가 강원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강원자치도의 조직·운영, 중 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 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강원자치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이 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한 경우(이양되는 권한과 관련된 의무·원칙·기준 및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해당법령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 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편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운영

제1장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 제7조(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① 정부의 직할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 ② 강원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강원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 ③ 강원특별자치도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 제8조(도지사와 도교육감 선거 및 선임방법 시범도입 등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법」의 집행기관(도교육감을 포함한다)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원자치도의 도지사와 도
 교육감 선거 및 선임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9조(강원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원자 치도에 대하여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강원자치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강원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소관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사무위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68조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강원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의원 또는 도의회 의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또는 도의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또는 도의 조례·규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자치도의 조례·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⑥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⑦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또는 도세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 령을 적용한다.

제2장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 제12조(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강원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강원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운영할수 있다.
 - 1. 강원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 2. 강원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에 따른 행 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 3.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 4. 강원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 5.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지정·해제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6.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와 도교육감(「지방자 치법」 제135조의 사무에 한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 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 다.
-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13조(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등) 지원위원회는 제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3장 자치권 강화

- 제14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수 있다.
- 제15조(도의회의원의 정수 및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 ① 「공직선거법」 제22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한다)의 정수를 정하는 경우 시·군의 지역구도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최소 2명이 되도록 추가하여 정한다.
 - ②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과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그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관할구역은 「공직선거법」 제26조제1항 및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제16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 제16조(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①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강원자치도에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를 둔다.
 - ②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원 및 시군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도의 경우 5급 이하, 시·군의 경우 6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임명하고, 그 직무 및 임용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8조(의회 기구 및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68조제3항,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 및 제125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1.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 운영 기준
 - 2.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 기준
 - ② 특별자치도의회의장은 행정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

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제19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1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 제 125조제1항·제2항(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의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1. 부지사의 수와 사무분장
 - 2. 행정기구의 설치 · 운영 기준
 - 3.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 4.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 ② 제1항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두는 부지사 1명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부지사 1명 외에는 강원자치 도에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공무원은 제외 한다) 및 제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④ 도지사는 행정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제20조(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지방공무원 법」 제41조제2항과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따 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 제21조(인건비성 예산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배제) ① 「지방자 치법」 제12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의 행정기구의 설치 와 소속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성 총액 등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 식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②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소속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강원자치도의 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 체 없이 그 전문을 붙여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2조(국가와 강원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① 도지사는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방법 및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③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사유·기 간·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 한다.
 - ④ 국가는 국가정책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와 강원자치도 간

- 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원자치도와의 인사교류에 적 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23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①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도인사위원회 또는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시보 임용을 면제한다.
- 제24조(특례부여 및 지원) ① 강원자치도의 시장·군수는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시·군에 대한 특례 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 ③ 강원자치도는 특례를 부여받은 시·군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교육자치

- 제25조(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부교육감을 두되, 그 정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부교육감 1명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교육감(제1항 단서에 따른 부교육감은 제외한다)을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도교육감이 임명한다.
 -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두는 보조기관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 및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26조(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을 둔다.
 -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조직과 운영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5장 자치재정

- 제27조(주민참여 예산제도)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 방식 등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 주민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주민참여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28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강원자 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 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29조(재정건전화 책무) ① 도지사는 재정이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재정준칙을 정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 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준칙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6장 감사위원회

제30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90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제34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

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도의회에서, 2명은 도교육감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 ⑤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⑥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자치감사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 ⑦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31조(감사위원장) ①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 ②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④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2조(감사위원회 사무기구)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며, 사무기구의 직원은 감사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직원은 일반직·특정직 국가·지방공 무원으로 한다.
 - ③ 그 밖에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33조(자치감사계획 등) ①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대상·기관 및 범위를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감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감사 실시 중에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예정일 30일 이전에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자치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자치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감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치감사계획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

된 내용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계획을 말한다)을 감사원장,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및 도지사(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교육감을 포함한다)에게 그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는 자치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1. 감사대상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출석 또는 답변, 관련 자료의 제출, 물품 등에 대한 봉인,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
- 2. 제1호 외에 감사와 관련된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출석 또는 답변과 관련 자료의 제출
- ⑥ 감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담당공무원 및 강원자치도의소속 직원이나 회계법인 · 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 · 확인 · 분석하게 할 수 있다.
- 제34조(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감사의 결과는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되는 자치감사 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 ③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자치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른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 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 다.
- 제35조(징계·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도지사(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감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36조(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① 감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

- 원 및 제33조제6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안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 4.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임명된 경우
- 5. 제37조에 따른 정치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 ③ 감사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면직하거나 해촉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의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37조(정치운동의 금지)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서 정하는 정치운동을 할 수 없으며 「지방공무원법」 제8 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8조(감사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그 행정 전반 또

- 는 특정한 정책·사업·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및 「지방자치법」 제21 조에 따른 주민감사청구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사무와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여야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감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감사원과 제2항에 따라 감사를 의뢰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감사대상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재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경우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내에 재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감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재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앙행정기 관의 장이 추천하는 감사담당공무원을 재감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3편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및 기반 조성

제1장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계획

- 제39조(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미 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강원자치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지속가능한 미래산업글로벌 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 2. 첨단지식산업, 물류산업과 금융산업 등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 3. 도로·철도·항만·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사항
 - 4. 교육의 진흥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 5. 국제교류와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6.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 7. 향토문화 보존과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 8. 농업 · 임업 · 축산업 · 수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 9. 자연생태·생명·환경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 10. 토지·물과 그 밖의 천연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 11. 해양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 12. 의료 ·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 13. 지역사회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14. 수자원 전력과 그 밖의 에너지 개발에 관한 사항
- 15. 지역정보화 기반구축과 진흥에 관한 사항
- 16. 개발사업(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 조달과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
- 1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제40조에 따른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또한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종합 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관련 주민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변경 또는 폐지된 종합 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원위원회와 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 ⑥ 종합계획 수립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0조(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① 종합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에 미래산업글로벌 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1.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목표ㆍ지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

- 2. 종합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 3. 종합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과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 4.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 5. 종합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 6. 강원투자진흥지구 지정 · 해제에 관한 사항
- 7.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종합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부지사와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 ④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장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기반 조성

제1절 첨단과학기술육성 및 산업기반조성

- 제41조(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 ① 국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 법」 제4조제2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에 연구개 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 제42조(강원과학기술원 설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기술, 데이터활용 융복합산업, 정밀의료기기 등 첨단과학기술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과 국내외 및 산업계와의 교육·연구교류를 축 진함으로써 지역의 취약한 과학기술기반을 해소하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강원과학기술원을 설 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강원과학기술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43조(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지식산업 분야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인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도지사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자를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과학기술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추천한 개발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지원위원회의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의심의는 「산업입지 및개발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심의로 본다.
- ④ 과학기술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사업자에게 과학기술단지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수 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기존 산업단지를 과학기술단지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 국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단지의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반시설(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사업자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전용

시설을 포함한다)은 국가와 강원자치도가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조성된 과학기술단지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우선적으로지정한다.
- 제44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 특례)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지사 및 관할 시장·군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제8조의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45조(물환경 보전에 관한 특례) ①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에 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에 한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내의 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내에서의 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할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46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과학기술단지를 조성

하는 개발사업에 한하여 「수도법」 제7조제3항·제4항 및 제7조의 2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47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항, 제7조제7항 및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국 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시행자와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의2제1항, 제21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전단, 제37조제1항·제2항·제5항, 제47조제1항 및 제4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7조제1항 단서, 제7조의2제1항 단서, 제7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조제2항 본문・단서, 제18조의2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37조제4항・제5항, 제46조의2제3항, 제46조의4제2항 및 제46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

제2절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운영

- 제48조(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① 도지사는 산림이용 진흥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림이용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1.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이 지정 목적, 이용계획, 주변 여 건에 적합할 것
 - 2. 대상지역의 산림자원과 경관이 산림이용진흥자원으로서의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 3.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 4. 환경적 ·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
 - 5. 산사태, 토사 유출 등의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을 것
 - 6. 산림이용진흥사업에 관한 투자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 7.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② 도지사는 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제49조에 따른 진흥지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종합계 획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진흥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 ④ 진흥지구의 위치·경계 또는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2 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 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이용진흥지구에서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산지와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하여야 하며,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⑥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⑦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⑧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계획 심의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 ⑨ 진흥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방법·관리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49조(진흥지구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진흥지구 활용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진흥지구 활용에 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 2. 진흥사업의 시행 방식 및 기간
 - 3. 진흥지구의 지정 목적 및 개발 방향
 - 4. 토지이용 및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5. 도로, 상·하수도 및 전력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비용 부담 계획을 포함한다)
 - 6. 생태·경관 및 환경보전계획과 오염방지계획
 - 7. 안전 · 재해 대책 및 구조 · 구급계획
 - 8. 진흥지구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간선시설 등에 대한 비용 부담계획
 - 9. 조성토지 등의 사용ㆍ공급ㆍ처분에 관한 사항
 - 10.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 11.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 12. 재원 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 13.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 제50조(진흥지구 지정의 효과) 진흥지구 지정이 있을 때에는 제49조의 진흥지구 기본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수립·승인 •변경·폐지 및 구역 변경이 각각 있는 것으로 본다.
 -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 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 4.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 7.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변경
 - 8.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
 - 9.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 10.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 11. 「농어촌정비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

- 12. 「자연공원법」 제8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또는 구역 변경
- 제51조(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 1. 지방자치단체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 4. 자본금 등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중 둘 이상이 산림이용진흥사업을 시 행할 목적으로 출자(出資)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도조례로 정하 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 6. 산림이용진흥지구 내의 토지소유자들이 산림이용진흥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재무 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 2. 유사 개발사업의 시행 경험
 - 3. 그 밖에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등) ① 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 2. 제5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53조제5항에 따른 승인 신청 기간까지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5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 5. 천재지변이나 사업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유로 산림이용진흥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시행 자의 대체지정에 관하여는 제51조를 준용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제53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산림이용진흥사업의 명칭ㆍ위치ㆍ면적
 - 2. 산림이용진흥사업의 개발 목적 및 방향
 - 3. 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
 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5.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6.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7.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③ 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였을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

- ·군수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의 신청은 제5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54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제5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지정·결정·신고·협의·해제 등(이하 "인·허가 등"이라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 고시가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혐의
 -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변 경 또는 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 5.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해제·신고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 6.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시설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같은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같은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인가
- 9. 「낙농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해제
- 10.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 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 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 의 승인

- 1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 1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 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를 위한 사전협의
- 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 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 15.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1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 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 17.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 18.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 19.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 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 인

가

-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 2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 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 22.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 2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허가
- 24.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2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 에 관한 협의
- 2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 획의 승인
- 27.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 2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 인 또는 신고
- 29.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 30.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 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

가

-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실 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 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려는 경우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인 · 허가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 · 허가 의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인·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 제55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토지 등을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할 수 있다.
 - ② 제53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 ③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본다.
- ④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56조(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① 도지사는 진흥지구에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0조·제12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및 제18조제2항・제4항・제5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② 진흥지구에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하여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청장 및 환경부장관의 권한은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 1. 같은 법 제7조에 대한 보호지역에서의 행위제한 기준에 관한 사항

- 2.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협의의 범위·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진흥지구에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하여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및 산지전용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④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자연도 1·2등급 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산림이용진흥사업에 포함할 수 있다.
- ⑤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초지법」 제23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지전용 허가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 다.
- ⑥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 및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 및 공원관리청의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① 산림청장은 제53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개발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에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을 재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 에게 국유림(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보전국유림을 포함한다)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거나 매각·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림에 시설물을 기부·철거하거나 원상회복할 것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 ⑧ 진흥지구에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기준과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기준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57조(진흥지구 내 환경영향평가 적용의 특례) ① 진흥지구 내 산림 이용진흥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40조까지,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 확인과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협의기준의 준수 확인에 관한 사항(이하 이 항에서 "사후조치등"이라 한다)은 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

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 8조제2항을 적용하되,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고시할 수 있다.
-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둔다.
- ⑥ 제5항에 따른 강원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58조(조세·부담금의 감면) ①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 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 세·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취득세·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 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 2.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4.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 5. 「하천법」에 따른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 및 하천 수 사용료
-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 제59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 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도로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강원자치도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교육환경의 조성

제1절 각급 교육기관의 설립・운영

제60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① 강원자치도에 소재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중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사람은 각각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자율학교의 교원과 학생은 자율학교 근무 또는 수학(受學)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61조(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 및 도교육감은 강원자치도 외 지역의 학생들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학교로의 전학(이하 "농어촌유학"이라 한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 및 도교육감, 시장·군수는 각급학교의 농어촌유학 활성 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촌유학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62조(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① 「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한다.
 - ② 「유아교육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제4항, 제1 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19조제4항(제19 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3조제2항, 제24조 제1항·제5항(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

- 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제5항, 제26조제3항, 제27조 및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63조(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①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3제2항, 제2항, 제30조제3항, 제31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4조의2제4항, 제43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60조제3항, 제60조의2제3항, 제60조3제3항 및 제63조제3항·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② 「초·중등교육법」 제43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경우 그 입학자격은 도조례로 달리정할 수 있다.
 - ③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④ 도교육감은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한다)를 교육부장관의 동의 없이 지정·고시할 수 있다.
 - ⑤ 도교육감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동의 없이 지정을 취소할 수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 2.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 3.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4.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 5. 도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절 교육특구 지정 · 운영

제64조(교육특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일정 지역을 제2 항 각 호의 국제적인 교육환경 및 지역 특화된 교육환경 조성을 목 적으로 하는 특구(이하 "교육특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교육특구의 지정 목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국제적인 교육환경 조성: 국제교육특구
 - 2. 지역 특화된 교육환경 조성: 일반교육특구
- ③ 교육특구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특구로 지정하려는 구역의 학교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 2.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원할히 할 수 있는 우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 3. 강원자치도 교육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여도가 우수할 것
- 4. 그 밖에 특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
- ④ 도지사는 제77조에 따라 학교의 폐쇄승인 등으로 교육특구를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교육특구 지정·변경·해제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교육특구를 지정한 경우 도교육감은 강원자치도 안의 다른 교육기관에서도 정규 교과과정에 외국어 능력 향상 등을 포함한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및 다양한 지역 특화 교육과정이 운 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5조(교육재정의 특별 지원)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다.
 - 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 2. 교육과정 운영

- 3. 교원 연수
- 4. 외국어교육
- 5. 이 법에 따른 교육특구 조성 및 국제학교 설립 · 운영
- 6. 기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6조(다양한 학교의 설립 및 육성) 교육특구 내에 소재하는 국립· 공립·사립의 초·중·고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 1.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학교
 - 2.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
 - 3.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 학교
 - 4.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학교
 - 5.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와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학교
- 6.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제67조(국제학교 설립 등) ① 교육특구에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하 "국제학교"라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 ② 국제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 간 상호 병설 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 「초

- · 중등교육법 | 및 「사립학교법 |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69조(국제학교 설립 자격) 교육특구에서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가 또는 강원자치도 및 강원자치도의 시ㆍ군
 - 2. 이 법, 다른 법령 및 외국의 법령(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법인
- 제70조(국제학교 설립승인 등) ① 제69조제1호의 자가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려면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설비 등 요건을 갖추어 미리 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제69조제2호의 자가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려면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설비 등 요건을 갖추어 미리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다만, 도교육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국제학교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승인하여야 한다.
 - ③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국제학교의 명칭, 설립목적,학사운영계획 등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국제학교의 설립·운영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사항 중 도조례로 정하는 주요 사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학교의 설립 협의 또는 승인과 그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71조(위탁운영 등) ① 제70조제2항에 따라 국제학교 설립승인을 받은 법인(이하 "국제학교법인"이라 한다)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운영을 제69조제2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69조제1호의 자는 설립한 국제학교의 운영을 도교육감과 협의 하여 제69조제2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국제학교는 국제학교법인이 설립한 학교로 본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제학교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72조(국제학교의 운영 등) ① 국제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 도록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② 국제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제학교의 장이 정하되, 국어 교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입학하는 외국인에게는 국어 교과와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할 수 있다.
 - ③ 국제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1. 학년도.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 등 수업에 관한 사항
 - 2. 학년제, 수업연한 등에 관한 사항

- 3. 국제학교의 교과용 도서 사용에 관한 사항
- 4.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 5. 입학자격, 입학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④ 국제학교의 학교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재학 중인 학생과 학교의 평가, 평가의 절차 및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인 국공립 국제학교의 수업료에 관한 사항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다.
- ⑤ 국제학교의 장은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수학 (受學)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해당 학교 과정에 입학(재입학·전학·편입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 ⑥ 국제학교 졸업자의 학력인정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⑦ 국제학교의 학생은 국제학교 수학(受學)으로 인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73조(다른 법률의 적용) ①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징계, 학교생활기록, 학생 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는 「유아교육법」 제14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25조제1항 및 제30조의6을 적용한다. 다만, 학생생활기록의 구체적인 작성과 그 방법은 도조례로 정할 수있다.

- ② 도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유아교육법」 제31조 및 「초·중등 교육법」 제64조에 따라 휴업명령·휴원처분 또는 휴교처분을 할수 있다.
- 제74조(교원임용 등) ① 국제학교에 두는 교원의 자격과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국제학교법인(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제외한다)이 설립·운영하는 국제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의 임면, 복무, 신분보장·사회보장 등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54조, 제54조의2,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 제66조의4 및 제70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에게는 같은 법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국제학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국공립 국제학교의 교원에 한정한다) 의 보수에 관한 사항 중 「교육공무원법」 제35조 각 호의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⑤ 국공립 국제학교의 장은 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국제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도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국제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5조(회계처리 등) ① 국제학교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 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도교육감이 정하는 회계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처리는 그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을 따른다.
 - ③ 국제학교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잉여금은 학교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 ④ 국제학교법인의 기관과 해산·합병은 그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국제학교법인의 기관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 제76조(국제학교의 설치등기 등) ① 국제학교법인은 설립승인을 받은 국제학교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승인일부터 3주 안에 「민법」 제50조에 따른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② 국제학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77조(「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

영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국제학교의 지도·감독, 재정지원 및이에 따른 조치, 국제학교의 폐쇄승인 등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학교법인"은 "국제학교법인"으로, "외국교육기관"은 "국제학교"로,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국제학교의 장"으로, "교육부장관"은 "도교육감"으로, "대통령령"은 "도조례"로, "학과"는 "학교"로 본다.

제78조(외국어교육 환경 조성) ① 국가와 강원자치도 및 강원자치도의 시·군은 교육특구의 외국어교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1. 공공기관의 외국어 서비스 제공
- 2. 공공시설물의 외국어 표기
- 3.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및 복지시설 등의 외국어사용 환경 조성
- 4. 그 밖에 외국어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어교육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79조(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외국학교법인(「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외국대학의 설립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도교육감 또는 도지사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승인하는 경우 각각 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 (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마쳐야 한다.
- ④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설립승인 절차 및 그 밖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외국대학의 설립기준에 관하여도조례로 정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 도교육감과 도지사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에 소속되는 위원회를 둔다.
- ⑥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①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은 "도교육감"으로, 외국대학은 "도지사"로 보고, "대통령령"(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은 제외한다) 또는 "교육부령"은 "도조례"로본다.
- ⑧ 국가 또는 강원자치도 및 강원자치도의 시·군은 외국교육기관

-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 ⑨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 ① 강원자치도 및 강원자치도의 시·군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또는 제14조에 따라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을 지원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학교기관의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참여 여부와 참여 방법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80조(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교육특구에 있는 공유재산 등을 제69조제2호의 자에게 무상 또는 시가(時價) 이하로 양여(讓與)하거나 대부·사용·수익(이하 이 조에서 "무상양여 등"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69조제2호의 자가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 등을 받은 공유재산 등을 매각하거나 분양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동 의를 받아야 한다.
 - ③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등의 무상양 여 등을 하는 경우 제69조제2호의 자가 양여목적에 맞게 사용하도

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외국인의 자유왕래 및 정주환경 조성

- 제81조(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특례) ①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강원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같은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입국하는 외국인의 범위 및 입국 절차에 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입국하는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82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81조에 따라 입국한 외국인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신청으로 체류지역 확대를 허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사증 없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에 체류할 수 있다.
 - ③ 법무부장관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초청자

- 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그 외국인의 신원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 ④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어진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 3. 허가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4.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 가 발생한 경우
-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 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⑤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국가경찰·자치경찰 공무원은 그 직무를수행할 때 제1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할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에 체류할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공항·항만과 선박·항공기 또는 그 밖의 교통수단에서 그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절차, 제3항에 따른 신원보증절차, 제4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3조(선박 등의 제공금지) ① 누구든지 제82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제82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선박·항공기 또는 그 밖의 교통수단(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이나 여권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제82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거나 이동하는 외국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목적으로 선박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 제84조(운수업자 등의 의무) ① 강원자치도와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사이를 운항하는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제82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선박 등에 탑승하려 하는 경우 그 외국인에 대한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외국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탑승을 거부하여야 한다.
 - ②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제8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이 탑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5조(공무원 등의 통보의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제82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거나 이동하는 외국인 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6조(「출입국관리법」의 적용 등) ① 제81조에 따라 입국한 외국인 의 체류실태조사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81조를 적용한다.
 - ② 제82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 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외국인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처리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③ 제83조를 위반한 자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의 처리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이 법에 따른 출입국심사·체류관리·조사·보호·강제퇴거 등의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출입국관리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 ⑤ 법무부장관은 제82조제1항·제3항·제4항에 따른 권한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 제87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 내 체류 중이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 체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제1장 관광 진흥

- 제88조(강원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강원자 치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 제89조(「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관한 특례) 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 제14조의2,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도불구하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업 및 카지노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총량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카지노업 및 카지노사업자는 총량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초과 수익금을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재투자 하여야 한다.
 -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을 제외한 관광사업
 - 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폐광지역진 흥지구의 대체산업 육성 또는 주민지원 사업 등"

- ③ 제1항의 적용시한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시한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90조(「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 중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91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제8조제4항·제8항,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35조(제1항제9호의2는 제외한다)부터 제40조까지, 제47조제1항,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 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 ②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제3항·제5항·제6항(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관련 사항만 해당한다), 제8조제2항·제8항 단서,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 제37조제2항(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위반행위만 해당한다), 제79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수 있다.

제2장 농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 제92조(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농지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②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과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 ③ 「농지법」 제30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93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①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협의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의(농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 ② 「농지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5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5항 및 제39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94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특례)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시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 다.
- 제95조(접경지역 농·축·수산물 군 급식 공급지원 등) ① 국가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강원자치도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지정된 접경지역 군부대에서 접경지역 내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조달하는 경우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지자체가 설치·운영 ·위탁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대상 품목·수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와 국방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선 구매하거나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품질 좋은 농축수산물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발전

- 제96조(탄소중립 녹색성장 중점 자치도의 조성) ① 국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선도적 실현을 위하여 강원자치도를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중점 지역(이하 이 조에서 "탄소중 립 녹색자치도"라 한다)으로 조성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강원자치도를 탄소중립 녹색자치도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시범사업, 녹색기술 산업 및 기후변화사업 등의 녹색성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탄소중립 녹색자치도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7조(자연환경 보전·관리의 기본 방향) ① 강원자치도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지역을 조성하도록 환경보전 방안을 추진함과 동시에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 계승해 나가야 한다.
 - ②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자연·생태자원 중 희소성 및 보전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자원·생물에 대한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8조(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희소하거나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자원 등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자원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존자원으로 지정하 려면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보존자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 ③ 보존자원의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99조(환경보전협력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환경 및 생태자원의 적극적인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 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보전협력기금을 설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재원은 강원자치도 귀속분으로한정한다.
 - 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부과금
 - 2. 「하수도법」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 3.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 4.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 5.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 6.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관계 법률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 7. 강원자치도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력기금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0조(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 및 육성) ① 도지사는 주민자치적인 환경보전 참여 및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조

- 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교육 시범도시를 지정하여 환경교육계 획 수립 및 체험 환경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도시의 환경교육계획 시행이 국민의 환경보전의식을 향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범도시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하고 환경교육도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1조(전략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개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강원자치도가설립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외의 자가 시행하는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 7조제2항을 적용하되 도지사는 별도의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을 환 경부와 협의하여 지정 고시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사항에 관한「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 따른 환경부장과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 외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접하는 개발계획 등의 경우에는 특례 적용을 제외한다.
- 제102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작성된 환경영향평 가서에 대하여 같은 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강원 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협의대상에서 제외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 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 8조제2항을 적용하되 도지사는 별도의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을 환 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고시할 수 있다.
 - ④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 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 내용의 관리 등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⑥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24조, 제28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66조 및 제76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2항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의 장의 권한은 제3항에 따라 지정 고시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한다.
-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를 포함한 2개 이상의 광역지방 자치단체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을 제외한 다.
- 제10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할때에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

7조제2항을 준용하고, 도지사는 별도의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을 환경부와 협의하여 지정 고시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사항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제45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를 포함한 2개 이상의 광역지방 자치단체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을 제외한다.
- 제104조(환경영향평가 대행자 등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5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거짓 ·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05조(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① 「자연환경보전법」 제 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101조부터 제103조에 따른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영향협의에 관하여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자연환경보전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 등이 자연경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
- ③ 자연경관심의와 관련되는 사항은 「자연환경보전법」을 준용한다.
- 제106조(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1 01조부터 제103조에 따른 개발사업 등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에 관하여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107조(「환경보건법」 등에 관한 특례)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
 ·제2항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도지
 사의 권한으로 한다.
- 제108조(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개발의 특례) ①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 시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자연도 (自然圖) 1등급 권역에 해당하는 지역 중 3만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을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을 개발계획에 포함하는 경우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등 자연환경의 보존과 이용이 조 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임업 진흥

- 제109조(「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산지관리법」 제6조,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 제3항 · 제4항, 제15조의2, 제17조제1항 · 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5조의5제1항,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제2항 · 제3항,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 제42조제1항 · 제2항, 제43조제1항 · 제2항, 제44조제1항 · 제2항 (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49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5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7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 ② 「산지관리법」 제6조제5항, 제8조제1항 · 제2항, 제10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10호, 제11조제1항제4호,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단서,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 · 제3항, 제15조의2제1항 · 제4항 · 제5항 · 제6항 · 제9항, 제18조제2항제1호 · 제2

- 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단서, 제25조의4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28조제1항제2호·제4호, 같은 항 제5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제3호,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 정한 사항 및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③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 1. 「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 보전산지의 변경이나 지정해제
- 2. 「산지관리법」 제8조제2항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
- 3. 「산지관리법」 제11조제2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 4.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50만㎡ 이상의 보전산지 가 편입된 산지일사사용허가
- 5. 「산지관리법」 제18조제4항의 산지전용타당성
- 6. 「산지관리법」 제19조제6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 7. 「산지관리법」 제40조제4항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완화
- 8. 「산림보호법」 제11조제3항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 9.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 1항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또는 지정변경 제110조(산림보호구역에 관한 특례)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제4호

- ·제2항,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111조(산림문화·휴양에 관한 특례) 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자연휴양림으로 지정후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대상지에 한정한다), 같은조 제3항,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 ②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및 제2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따라 조성되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다.
- 제112조(「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에 관한 특례) 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사전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에 대한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을 할 때 산림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보호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사전협의의 범위·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으로 구분·지정한 목적을 고려하여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113조(「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에 관한 특례) 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5조의 산림청장과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 ②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2항·제21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

- 제114조(민군복합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군사시설과 훈련 장 등을 지역단위로 통합하고 주거·의료·교육시설 등을 갖추어 군·군인가족·지역주민이 정주할 수 있는 단지(이하 "민군복합단지"이라 한다)를 강원자치도 내 시·군(「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내 시·군으로 한정한다)에 우선 조성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민군복합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할 경우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115조(민간인통제선 및 제한보호구역 지정범위에 관한 특례) 국방부

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도지 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강원자치도 접경지역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1. 민간인통제선 : 군사분계선의 이남 5킬로미터 범위 이내
- 2. 제한보호구역 : 군사분계선의 이남 15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 제116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하여 직접 국방부장관에 건의할 수 있다.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5조제1항의 국방부심의위원회에 도지사를 위원으로 위 촉할 수 있다.
 - ④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⑤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의 작전성 검토 등 협의기준에 따른 협의결과 같은 항에 따른 허가 등 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해 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7조(미활용 군용지 처분계획 수립)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군부 대 통폐합 및 재배치로 인하여 군용지로 활용되지 아니하는 강원자 치도 안의 토지(이하 "미활용 군용지"라 한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미활용 군용지 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미활용 군용지 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른 군부대의 이전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강원자치도 내 미활용 군용 지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발생된 미활용 군용지의 현황을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른 군부대의 이전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 제118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등) ① 국방부장관은 미활용 군용지를 징발 해제, 양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지상물 또는 지하 매설물을 계속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2. 국방부장관이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의 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복구를 의뢰한 경우
- 3.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고 국방부장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
- 4.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의 제거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을 적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미활용 군용지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 제119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공공사업(「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등을 위해 미활용 군용지에 대하여 「징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징발해제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

- 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을 요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사업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제2항 및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으로 본다.
- ③ 국방부장관이 제117조제1항에 따라 미활용군용지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가격은 「국유재산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미활용 군용지의 지상물 또는 지하 매설물을 공공용·공용으로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 은 해당 지상물 또는 지하 매설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 ⑤ 관할 시장·군수는 미활용 군용지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다.
- 제120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① 국가는 미활용 군용지의 효율적 인 활용을 위하여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제119조제1항에 따른 공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 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 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1조(지방자치단체의 미활용 군용지 등 활용 지원) ① 국가는 지방 자치단체가 제117조제1항에 따른 처분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국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1. 미활용 군용지가 매각될 당시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하천 법」에 의해 하천으로 편입되어야 하는 토지
 - 2.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도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토지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활용 군용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5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분할상환하게할 수 있다.
 - 1. 강원자치도 또는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2. 시·군 또는 시·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 업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3.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4. 피징발자, 피수용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강원자치도 또는 관할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 계약에 따라 최초의 대금을 납부한 날부터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전제로 사용・수익 허가나 대부를 할 수 있다. 다만,지방자치단체가 매각대금을 체납한 때는 「국유재산법」 제52조에따라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국가는 미활용 군용지를 민간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계획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이용계획에 부합 할 수 있도록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장 경제 · 산업 · 해양수산업 등 진흥

- 제122조(폐광지역 경석의 광물 지위 부여 특례) 강원자치도의 폐광지역 안에서 석탄채굴과정에서 발생한 경석(硬石)은 「광업법」 제3조제1호의 광물로 본다.
- 제123조(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강원자치도의 항만 및 배후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연간 1천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고 정기적인 국제 컨테이너선박 또는 국제 화객선 항로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 2. 3만톤급 이상의 컨테이너선박용 전용부두 보유 또는 2만톤급 이 상의 잡화부두 및 컨테이너 하역 크레인 보유
- 3.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중 육상구역의 면적 및 그 배후지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배후지는 해당 항만과 접하여 있거나 전용도로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 항만과의 물품이동이 자유로운 지역으로서 화물의 보관, 포장, 혼합, 수선, 가공 등 항만의 물류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
- ②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관리권 자는 강원자치도 자유무역지역의 육성과 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상·재정상의 지원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1. 입주기업체 및 지원업체의 사업활동 지원
- 2. 공공시설의 유지 및 관리
- 3. 각종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 4. 그 밖에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또는 운영에 관한 업무
- 제124조(해양심층수 취수해역지정 및 개발허가 특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3항·제4항, 제21조, 제22조, 제23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4조, 제46조, 제52조제1호, 제58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

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 제125조(국립묘지 안장 및 이장에 관한 특례) 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에 설 치하는 국립호국원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제외한다)을 그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는 강원자치도에 설치하는 국립호국원에 이장(移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이장을 하는 경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안장시설에 안장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제5편 보칙

- 제126조(청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48조제8항에 따라 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 2. 제63조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 3. 제6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 4. 제127조제1항에 따른 인가·승인·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 제127조(감독) ①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자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인공 구조물의 개축·변경·이전·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 가·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28조(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이 법에 따라 신분에 변동이 발생하는 공무원에게는 그 공무원의 경력 또는 담당업무, 종전의 직위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직에 임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9조(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 등의 징수)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

관의 장의 과태료, 과징금 및 개발부담금과 그 가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 권한이 도지사의 권한으로 된 경우에 그 과태료 등이 체납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원위원회 위원, 도인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 와 관련하여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편 벌칙

- 제131조(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 제3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32조(국제학교에 관한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70조제2항에 따른 설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 2. 제70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0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학교의 설립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 4. 제7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폐쇄승 인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를 폐쇄한 자
- ② 제7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국제학교의 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 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33조(출입국관리분야에 관한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83조제1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알선한 자
 - 2. 제83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선박 등이나 여권을 제공한 자
 - 3. 제83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거나 이동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선박 등을 제공한 자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82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 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자
- 2. 제83조를 위반한 자로서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④ 제84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제82조제5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국가경찰·자치경찰 공무원의 직무상 정당 한 요구를 거부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34조(미수범) ① 제1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 제1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2조 및 제13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 (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6조(과태료) ① 제127조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76조에 따른 설치등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86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제2항의 경우에는 도교육감을 말한다)가 부과·징 수한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4항에 따른다.
- 제137조(고발 및 통고처분) ① 제81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건은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② 출입국관리공무원 외의 수사기관이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을 입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③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은 제1항에 정한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범칙금"이라 한다)을 지정한 곳에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고, 해당 위반자가 통고받은 대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 ④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은 조사결과 범죄의 정상이 금고

- 이상의 형에 처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⑥ 법무부장관은 통보처분 대상자의 연령과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과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통 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 ⑦ 제3항에 따른 통고처분의 고지와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조례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나 종전의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이 법에 따라 도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종전 강원도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서 강원도, 강원도지사, 강원도의회, 강원도의회 의원, 강원도 조례 및 강원도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도지사 또는 교육감이나 그 소속기

관의 장이 행한 인가·허가 등의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한 신고·신청 등의 행위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위 및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법률 제1887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23년 6월 11일 당시 종전 강원도 조례·규칙은 이 법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조례·규칙이 새로 제정·시행될 때까지 계속적용할 수 있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및 도조례에서 종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